

치의생명과학연구소 공동실습실 안전관리 시행 규정(세부사항)

2022. 12. 16 .

제1조(목적)

이 시행 세칙은 부산대학교 치의생명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안전관리 시행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연구원” 이란 연구소 내에서 상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 전공의” 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계자란 통상적으로 연구소 내에서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외부인이란 상시적으로 연구소 내 출입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연구소 출입 및 사용 조건)

- ① 연구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연구 관련하여 출입을 인증받은 자 또는 연구소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 ② 연구소에 출입하면서 실험하는 '연구원 및 전공의'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하고자 하는 실험 이전에 반드시 학기 당 6시간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치의생명과학연구소장에게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 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구소 내 책임자가 결정한다.)

③ 연구실 내 기기 사용 실험 및 연구 시간은 기기에 따라서 관리자의 관리 감독 또는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내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실험 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지 않는다.

(단, 연구원 또는 전공의를 제외한 제 3자가 연구소 내 실험을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험 내용과 연구 관련 시간은 『별첨1』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시작 1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연구소 관리 및 운영)

① 연구소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계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만약 연구소 내 인사이동, 연구원 또는 전공의, 관계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정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기계, 생물, 소방, 전기)을 숙지하고 연구실 내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부착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인의 사용에 대한 규정)

① 외부인이 연구소 내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청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학기 당 6시간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 또는 '연구실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내역을 증빙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또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연구실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부인 기기 사용 신청서와 서약서를 사용기간 1주일 전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첨1, 2 양식 참조).

제6조(관련법률)

치의생명과학연구소 안전 관련 시행세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이 안전관리 시행 규정(세부사항)은 2022년 12월 16일자로 시행한다.